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
2. 건 명:한밭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 건 요 지: 붙임참조

4. 검 토 의 견 : 붙임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11월 26일

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

한발교육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7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한밭교육상의 명칭을 변경하여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고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시상부문을 학교급별·영역별로 구분하고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"한밭교육상"과 "교육상"을 "한밭교육대상"과 "교육대상"으로 명칭변경(안 제1조 내지 제3조, 안 제5조 내지 제7조)
- 나. 시상부문을 3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확대함(안 제3조제1항).
- 다. 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(안 제3조제2항)

3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안은 "한밭교육상"의 명칭을 "한밭교육대상"으로 변경하여 한밭교육대상이 대전교육 최고의 교육상으로서의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는 동시에,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시상부문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

주요 내용은

- 조례 제명을 "한밭교육상조례"에서 "한밭교육대상조례"로 하고,
- 제1조는 "한밭교육상"을 "한밭교육대상"으로,
- 제3조 제1항은 "초·중등교육부문(유아·특수교육부문포함)"을 "유아·특수 교육 부문"과 "초등교육 부문", "중등교육 부문" 으로 세분화 하였으며, "체육교육부문"은 "예·체능교육 부문"으로 하고, "평생교육·교육 독지가 부문"을 신설함.
- 제3조 제2항은 "부문별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" 단서 규정을 신설함.
- 제8조는 간사를 "초등교육과 인사담당장학관"에서 "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"으로 개정함.

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
본 조례안은 한밭교육상의 권위와 영예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제명과 교육상의 명칭 변경, 시상부문을 학교급별·영역별의 세밀한 구분, 평생교육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독지가를 적극 발굴·시상하기 위한 평생교육·교육 독지가 부문 신설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